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7. 10. 24.(화) / 총 1매(본문 1)
담당부서	도로투자지원과	담당자	· 과장 방윤석, 사무관 박병익, 주무관 박상철 · ☎ (044) 201-3897, 3901, 3896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“800원 미납자에 8천800원 부과” …민자고속道 ‘횡포’

민자도로 부가 통행료 처리기준 마련·시행, 유료도로법령 정비 추진

- 민자고속도로社가 부가 통행료 부과 등 미납 통행료 처리 기준을 한국도로공사와 동일하게 마련·시행토록 개선하여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.
 - 단말기 오류 등 이용자 과실이 없는 미납은 부가 통행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, 부가 통행료 납부기한 명시, 최종 미납 안내 시 등기 시행 등을 포함하겠습니다.
- 아울러, 부가 통행료 부과 대상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여 미납 통행료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연합뉴스), 10.24 >

- ◆ “800원 미납 운전자에 8천800원 부가금”…민자고속道 ‘횡포’
 - 용인서울고속도로, 강제 징수권한도 없이 마구잡이식 부과
- ◆ 미납 통행료 ‘10배 부과’ 유료도로법 오류투성이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박병익 사무관(☎ 044-201-390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